

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

		(앞쪽)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(법인소재지)	(휴대)전화번호	
① 자기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	③ 주식·채권·가상화폐 매각대금 원	
	해외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(해외 금융기관명:) 원	[] 주식·채권 매각대금 원 [] 가상화폐 매각대금 원	
	④ 증여·상속 [] 증여(금액:) 원 증여세 신고 여부: [] 신고 [] 미신고 [] 상속(금액:) 원 상속세 신고 여부: [] 신고 [] 미신고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[] 외화(금액:) 원 외화반입 신고 여부: [] 신고 [] 미신고	
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[] 보유 현금 [] 그 밖의 자산(종류:)	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	⑦ 토지보상금 원	
	[] 주택·토지 원 [] 기타(종류:) 원		
	⑧ 소계 원		
	⑨ 차입금 등	⑩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	토지담보대출 (금융기관명:) 원
		신용대출 (금융기관명:) 원	
		해외 금융기관 대출 (금융기관명:) 원	
		그 밖의 대출 (대출 종류:) 원	
⑪ 그 밖의 차입금 원		⑫ 소계 원	
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		
⑬ 합계	원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① “자기자금” 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2. ② “금융기관 예금액” 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로의 예금(적금 등)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송금한 해외 금융기관명 및 자금도 적습니다.
3. ③ “주식·채권·가상화폐 매각대금” 란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4. ④ “증여·상속” 란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및 증여세, 상속세 신고 여부와 금액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√ 표시를 하며,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.
5. ⑤ “현금 등 그 밖의 자금” 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(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)을 적고,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“보유 현금” 에 √ 표시를 하며, 현금이 아닌 경우 “그 밖의 자산” 에 √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.
6. ⑥ “부동산 처분대금 등” 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7. ⑦ “토지보상금” 란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중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으며,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⑦란에 기재합니다.
8. ⑧ “소계” 란에는 ② ~ ⑦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9. ⑩란 및 ⑪란에는 자기 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10. ⑩ “금융기관 대출액 합계” 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, 토지담보대출·신용대출·해외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과 금융기관명을 적으며,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.
11. ⑪ “그 밖의 차입금” 란에는 ⑩란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√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.
12. ⑫란에는 ⑩란 및 ⑪란의 합계액을, ⑬란에는 ⑧란과 ⑫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